

부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나505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나505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30737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 종결 2021. 4. 15.

판결 선고 2021. 5. 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30737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1. 3.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4. 20.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D사이에 체결된 2015. 4. 20.자1)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E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D의 아들이고, B는 D의 친동생이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0. 11. 15. E와 사이에 E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E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1	2010. 11. 15.	170,000,000원	2015. 11. 13.	기업은행
2	2010. 11. 15.	85,000,000원	2014. 11. 14.	기업은행

-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E는 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 3) E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9.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11. 19. 기업은행에 239,073,043원[= 대출원금 234,538,800원(= 149,538,800원 + 85,000,000원) + 이자 4,534,2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기로 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한 보증료는 24,130원이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비용으로 1,151,320원을 지출하였다.
- 5) 기술신용보증기금은 E로부터 취득한 양도담보물을 위 대위변제일 이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87,499,787원을 추가보증료 24,130원, 법적 절차비용 1,151,320원, 대위변제금액 중 86,324,337원에 변제충당하였는데, 변제충당된 대위변제금액 86,324,337원에 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851,418원이다.
- 6) 기술신용보증기금은 E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1888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0. 위 법원으로부터 E와 원고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53,600,124원[= 152,748,706원(= 239,073,043원 - 86,324,337원) + 851,418원] 및 그중 152,748,706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4.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 7)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7.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의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0. 15. 인용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카단30663). 제3채무자인 F는 2015. 10. 14.경 위 임차보증금 230,000,000원 중 180,000,000원은 2013. 6. 24.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G에게 변제공탁을 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부산지방법원 2015년금제7927호로 집행공탁하였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H)에서 50,000,000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위 G에 대한 변제공탁금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6. 10. 20. 'G과 A 사이에 2013. 6. 24. 체결된 A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의 반환 채권 중 양도된 180,000,000원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G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6444), 이에 G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6나51832),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8다20977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E의 재정상태

E는 2014. 3. 31. 창원세무서에 201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218,644,748원이어서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5. 3. 31. 같은 세무서에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47,845,789원이어서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라. D의 재산과 자력상태

1) 이 사건 아파트 가) D는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1. 3. 31. N 주식회사로부터 김해시 L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B 명의로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7. 2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8. 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41,000,000원, 근저당권자 P조합,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014. 2. 7. 169,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B는 2014.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거래가액은 200,000,000원이었다. 이후 2014. 11. 13. 채권최고액 188,400,000원, 근저당권자 Q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채무자가 B로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다음날인 2014. 11. 14.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0. R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거래가액은 222,000,000원이었다. 이후 채무자가 피고로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4. 2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기타 재산 가) 이 사건 각 토지

D는 김해시 S전 112㎡, T 전 66㎡, U 전 4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유자 3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2019. 11.경을 기준으로 그 개별공시지가는 1㎡당 82,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는 대략 13,345,500원[= (112㎡ + 66㎡ + 473㎡) × 82,000원 / 4명] 상당이다.

나) J아파트 K호

(1) D는 2009. 11. 30. 김해시 I에 있는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2009.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거래가액은 148,000,000원이었다.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V, 채무자 D로 하여, 2009. 11. 30. 채권최고액 84,000,000원, 2010. 6. 15. 채권최고액 25,200,000원, 2013. 6. 21.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채권최고액 2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5. 30., 나머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8. 각 말소되었다.

(3) D는 2013. 6. 28. W에게 201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거래가액은 215,000,0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D는 2015. 3. 26. R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4. 20.경 그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무렵 그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E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동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사실상 230,000,000원(= 집행공탁금 50,000,000원 + 사해행위 취소 판결금 180,000,000원)을 출채하여 공동면책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D에게 115,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3) 다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사해행위 취소 판결금 채권에 관한 부분은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15. 4. 20.경 이후에 확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위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앞서 2010. 11. 15.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가 2010.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금이 합계 2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이르러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218,644,748원 및 -47,845,789원이나 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E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도 E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9.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11. 19. 기업은행에 234,538,8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스스로의 출채에 의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있어,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5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15. 4. 20.경을 기준으로 D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일한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가액은 2019년경 약 13,345,5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2015년경을 기준으로 위 13,345,500원 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예금 등 다른 적극재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D의 진술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상정하더라도, 2015. 4.경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담보가치는 33,600,000원(= 2015. 3. 26.자 매매의 거래가액 222,000,000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88,4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던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는 최대 46,945,500원(= 13,345,500원 + 33,600,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11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D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 사건에서 D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이름으로 양도받게 되었고, 이것 또한 대출뿐인 아파트라서 수입이 끊어지면서 이자를 낼 수 없어 팔게 되었다. 대출금 갚고 카드값 결제하고 피고에게 방 보증금 20,000,000원을 주고 본인의 방 보증금 10,000,000원, X 7,000,000원, 소액으로 빌린 돈을 갚고 나니 양도세를 낼 돈이 없어 현재 분할로 조금씩 갚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성격이 증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2015. 4. 20.자3) 증여계약에 기한 금전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D는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아버지 Y이 2012. 7. 13.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중 20,000,000원이 피고에게 상속되었는데 이를 어머니인 D가 차용하여 쓰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이고, 피고는 이로 인해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D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는 D의 아들로서 어머니인 D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5,000,000원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대상인 2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2015. 4. 20.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1. 3.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2015. 4. 20.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병준

판사목명균

판사이순혁

- 1)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2015. 4.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2) 이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답변서에는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 매도금 중 받은 2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어머니인 D가 피고의 돈을 사용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014. 11. 3.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날이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3. 26. R에게 매도되어 2015. 4. 20.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D가 2015. 4. 20.경 R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잔금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중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R에게 매도될 때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대상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4. 20.이 잔금지급일 무렵으로 판단되므로, 위 2015. 4. 20.을 D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 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서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4. 11. 3.을 위 증여계약의 체결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